

검정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20일
신고인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	
	주소		
기관 명칭			
소재지	사무실	전화번호	
	실험실	전화번호	
변경신고 사항	변경 전	변경 후	

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9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정기관 지정사항을 변경하고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·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

제출서류	1.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. 검정기관지정서 원본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